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속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 견본주택(☎ 031-943-4400)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3.07.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11.03.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동임대주택)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으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대상에서 제외처리 함)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규정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2022.11.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공급 세대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자[(2023.05.03.)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에게 공급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내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기존 주택 당첨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하나, 본 아파트 당첨자로 선정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3.)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시, 경기도, 인천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이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여,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이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X	X

- 단, APT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청약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2.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게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 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 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 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6항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 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pj5.lynn.co.kr/>)**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하여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 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3년 (다만, 전매행위 제한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3] 제4호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서 입주자로 선정된 날(당첨자 발표일 2023.11.21.) 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제1항에 의거 분양가격이 법 제5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방법으로 결정된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5년,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의 8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주택은 3년의 거주의무기간을 적용하고 있으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的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 거주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은 “인근지역 주택매매 가격”的 10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거주의무기간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단, 2023.01.03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의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거주의무기간의 폐지는 향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 시 소급 적용될 예정이오니, 반드시 변경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법규 개정과정에서 거주의무기간 폐지와 관련된 보도자료 내용이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 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 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101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 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서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경찰 및 경찰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시 사업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 취소 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척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 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비조정대상지역 파주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6억원 이상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 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청약자의 편의를 위해 사이버견본주택(<https://pj5.lynn.co.kr/>)을 운영하므로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세대 내부 등 확인이 가능합니다.

■ 당 아파트의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하며, 입주자모집공고와 관계법령이 상충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자격검증 서류제출 (당첨자 적격여부 확인)	계약체결
일 정	2023.11.13.(월)	2023.11.14.(화)	2023.11.15.(수)	2023.11.21.(화)	2023.11.24.(금) ~ 11.27.(월)	2023.12.04.(월) ~ 12.07.(목)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방문 접수 (10:00 ~ 17:00)	방문 체결 (10:00 ~ 16: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당사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동파동 1802)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 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 접수(10:00~14:00,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단, 코로나19로 인해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로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 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또는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제65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동법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이미 체결된 주택의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분양권이 이미 제3자에 전매된 경우 분양권 매수자는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계약이 취소되더라도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2023.07.31.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파주시 주택과 - 44270호(2023.11.02.)로 입주자모집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21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최고 27층 5개동, 총 41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특별공급 248세대(일반[기관추천] 41세대, 다자녀가구 41세대, 신혼부부 75세대, 노부모부양 12세대, 생애최초 79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6년 08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	세대별 대지지분 (㎡)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주택	2023000585	01	084.9891A	84A	84.9891	28.6344	113.6235	72.0533	185.6768	56.7496	302	30	30	54	9	57	180	122	13
		02	084.9867B	84B	84.9867	28.7190	113.7057	72.0512	185.7569	56.7480	116	11	11	21	3	22	68	48	5
	합 계									418	41	41	75	12	79	248	170	18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음.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임.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전체의 주거공용면적(벽체공용면적 제외)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님.(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가 속한 동의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본 공고의 내용 중 약식표기로 표현된 내용이 있으니 주택형과 약식표기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 홍보물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나,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형 약식표기 안내

공고상 주택형	084.9891A	084.9867B
약식표기	84A	84B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사이버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은 기준 승인 및 설계도서 상 표기 방식을 청약홈 시스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변경한바 청약시 반드시 주택형을 확인하여 확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약식표기는 기준 승인 및 설계도서상의 표시 방식임)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표기 (타입)	공급 세대수	동(라인)	층별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계		1차(15%)	2차(15%)	3차(15%)	4차(15%)			
84A	302	1301동 1,2,4호 1302동 1,2,4호 1303동 1,3호 1304동 1,3호 1305동 1,3,4호	기준층	199	192,276,343	361,323,657	553,600,000	55,4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83,000,000	166,200,000	
			5층~9층	65	192,276,343	350,223,657	542,500,000	54,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81,300,000	163,000,000	
			4층	13	192,276,343	339,123,657	531,400,000	53,2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79,700,000	159,400,000	
			3층	12	192,276,343	328,023,657	520,300,000	52,1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78,000,000	156,200,000	
			2층	7	192,276,343	316,923,657	509,200,000	51,0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76,300,000	153,000,000	
			1층	6	192,276,343	305,823,657	498,100,000	49,9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149,400,000	
			기준층	75	192,270,914	342,229,086	534,500,000	53,5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160,600,000	
84B	116	1301동 3호 1302동 3호 1303동 2호 1304동 2호 1305동 2호	5층~9층	25	192,270,914	331,629,086	523,900,000	52,4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157,500,000	
			4층	5	192,270,914	320,929,086	513,200,000	51,4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154,200,000	
			3층	5	192,270,914	310,229,086	502,500,000	50,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75,300,000	151,000,000	
			2층	4	192,270,914	299,529,086	491,800,000	49,2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73,700,000	147,800,000	
			1층	2	192,270,914	288,829,086	481,100,000	48,2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72,100,000	144,500,000	
			기준층	75	192,270,914	342,229,086	534,500,000	53,5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80,100,000	160,600,000	
			5층~9층	25	192,270,914	331,629,086	523,900,000	52,4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78,500,000	157,500,000	
			4층	5	192,270,914	320,929,086	513,200,000	51,4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76,900,000	154,200,000	

-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 심사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에 따라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있음.
- 근린생활시설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상기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이 포함되지 않은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공급금액은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임.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공동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주차장,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층수는 건립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수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한 개의 공간을 각각 한 개의 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 분양가를 산정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아파트인 경우 전제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되고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인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하여야 함.(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납부 약정일이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은행 영업일을 납부일로 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지적정리에 따라 대지면적 확정시 면적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본 아파트의 분양조건(계약금 납부시기, 중도금 대출신청 및 발생일자 등)은 수분양자의 분양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별공급 신청 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分		84A	84B	합 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4	1	5
	장기복무 제대 군인	4	1	5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5	2	7
	중소기업 근로자	5	2	7
	북한이탈주민	2	1	3
	장애인	경기도	4	2
		서울특별시	3	1
		인천광역시	3	1
	소계	30	11	4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파주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15	6	21
	수도권 거주자 (50%)	15	5	20
	소계	30	11	41
신혼부부 특별공급		54	21	75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9	3	12
생애최초 특별공급		57	22	79
합 계		180	68	248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와 소득 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생애최초)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 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 분	내 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월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 납부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부일에 납부한 월 납부 인정금액이 85㎡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경기도</th> <th>서울특별시</th> <th>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 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 경기복부보훈지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교육기획과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어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 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41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 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제3항)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5조에 따라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및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 함), 나머지 50%는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경기도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파주시 또는 경기도 거주자는 기타지역에 배정된 세대수 내에서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 우선공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8% 범위) : 75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준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관계 증명서 상 임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자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출생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 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임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6,509,452원	~7,622,056원	~8,040,492원	~8,701,639원	~9,362,786원	~10,023,933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509,453원~ 7,811,342원	7,622,057원~ 9,146,467원	8,040,493원~ 9,648,590원	8,701,640원~ 10,441,967원	9,362,787원~ 11,235,343원	10,023,934원~ 12,028,720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6,509,453원~ 9,113,233원	7,622,057원~ 10,670,878원	8,040,493원~ 11,256,689원	8,701,640원~ 12,182,295원	9,362,787원~ 13,107,900원	10,023,934원~ 14,033,506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추첨제, 30%)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9,113,234원~	10,670,879원~	11,256,690원~	12,182,296원~	13,107,901원~	14,033,507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 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r> <th>주택</th> <th>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h>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head> <tbody>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 군복무종(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세대수의 3% 범위) : 1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신청 주택형의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할 것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내 거주한 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나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 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9% 범위) : 79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 또는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임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가능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3.11.03.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함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신청자 본인의 5년 이상 소득세 납부사실 증명을 위해 사업주체에 제출하는 서류는 5년간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용이며 신청자 및 세대원별 합산소득은 전년도소득금액증명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기타 본 공고상에 표지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462,288원	~9,908,673원	~10,452,640원	~11,312,131원	~12,171,622원	~13,031,113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462,289원~ 10,415,123원	9,908,674원~ 12,195,290원	10,452,641원~ 12,864,787원	11,312,132원~ 13,922,622원	12,171,623원~ 14,980,458원	13,031,114원~ 16,038,293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총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1인 가구	160%이하	~10,415,123원	~12,195,290원	~12,864,787원	~13,922,622원	~14,980,458원	~16,038,293원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총족	10,415,124원~	12,195,291원~	12,864,788원~	13,922,623원~	14,980,459원~	16,038,294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661,147)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td>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td>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종종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을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 거주자 30%, 경기도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3)

1. 군복무 중(직업군인 제외)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구하고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
2.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3.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신청자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03.)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 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파주시 거주자(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30%, 경기도 거주자(6개월 이상 계속하여 거주) 20%, 수도권(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6개월 미만) 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입주자저축 순위별 요건

구 分	순위	주택형	신 청 자 격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60㎡ 초과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구 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변경 없이 청약 가능함.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를 말함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제53조, [별표1] 1호)

구 분	신청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의 경우 미혼으로 한정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p>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8호, [별표1] 2호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 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 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총 점	84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원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총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별표 1 제1호가목2)를 준용한다.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호 및 별표1 제1호 가목2)

※ “소형·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됨

① 현재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보유한 경우 특례에 해당됨.

② 현재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자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주체),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3.11.13.(월) (‘청약Home’ 홈페이지 : 09: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 경기도 파주시 동파동 1802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함)
일반공급	1순위	2023.11.14.(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3.11.15.(수) 09:00~17:30		

-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 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시 유의사항

- 청약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난 후 청약 바랍니다.
- 청약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셔야 함)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금융인증서 등을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유효한 금융인증서 등을 이미 소유하신 고객은 추가발급 받으실 필요가 없으며 청약접수일 전에 인증서 유효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고객께서는 미리 갱신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청약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음.
- 청약신청자격 착오기재 등(수정 불가)에 따라 부적격으로 판정되어 당첨취소 및 계약체결이 불가능한 경우 당사 및 청약접수 은행에서 책임지지 않음.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비고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본인	- 무주택 입증서류를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 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견본주택 비치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서명인증서(외국인에 한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불가	신청자 구비
	O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본인 서명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O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가입)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청약Home' 홈페이지에서 청약 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www.applyhome.co.kr)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소유자 제외]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표기하여 "상세"로 발급 - 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	
	O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우선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현 거주지 및 거주기간 등 확인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O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을 조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신청자 구비
	O	출입국사실증명서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및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 제외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O	주민등록표등본 (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사유,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상세"로 발급)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기관추천 특별공급	O	해당기관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 해당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갈음	신청자 구비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자녀로 인정 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3세대이상 세대 구성 시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포함된 경우	
다자녀 특별공급	O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신청자 구비
	O	출입국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과 해당 시·도 거주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임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O		출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 출인신고일 확인		신청자 구비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input type="radi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본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유산 낙태관련 진단서 등) 제출 *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임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 비사업자의 경우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O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여부 확인		신청자 구비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1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피부양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한 경우 (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O		출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출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O		소득세 납부입증서류	본인	-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직장, 세무서)		신청자 구비
	O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되어야 함		
	O		소득증빙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 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input type="radio"/>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본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현재 혼인중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input type="radio"/>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input type="radio"/>	주민등록표초본 (상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시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사업자의 경우 	견본주택 비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input type="radio"/>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인감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불가)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대리 신청자 구비
	<input type="radio"/>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 제출 생략 	
	<input type="radio"/>	신분증 및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input type="radio"/>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 자료	해당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배우자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및 세대원)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해당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나, 세대주 기간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서류발급 시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를 확인할 수 있게 모두 공개로 발급해야 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명시하여 발급)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 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 해당직장 * 세무서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해당직장
자영업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 해당직장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및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 국민연금 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원본, 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재표 ③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세무서 *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 회사의 급여명세표	* 세무서 *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해당직장 *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견본주택에 비치) ②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규칙 제2조제2호의3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해당직장 * 세무서 *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서 과거 1년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 내역 증명 포함)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 납부입증 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소득금액증명원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증명	* 해당직장 * 세무서

※ 상기 모든 증명서류(신청시 구비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견본주택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또한, 상기 서류 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자격확인 제출서류]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 포함) 전원의 자산 입증서류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 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및 토지대장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상가,오피스텔 등)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주민센터 ③ 서울시이택스(etax.seoul.go.kr), 위택스(www.wetax.go.kr)
		해당자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 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농지원부 ② 축산업 허가증 ③ 토지이용계획확인서	① 주민센터 ② 지자체 축산과 ③ 토지이용(www.eum.go.kr)
'부동산 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② 주민센터

▪ 일반공급 자격확인 구비서류[계약체결 전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 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또는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군 복무기간 명시)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지역 우선공급받으려는 경우
	○	단신부임 입증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의거 당첨자(청약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 (본인만)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 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근로 관련 서류, 취업, 사업비자 발급내역 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배우자 : 공급신청자가 단신부임임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 등재에 한함) - 부양가족수에 직계존속을 포함하고,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신청자와 세대분리 된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부적격당첨 통보를 받은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해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개별주택가격확인서 또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건축물관리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청약자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분'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당사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인감증명서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본인이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함.(외국인 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④KB국민인증서 또는 ⑤토스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본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マイ데이터('청약도움') 서비스]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단,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를 거부하더라도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③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포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고령자, 장애인, 인터넷 취약자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 비 사 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예·부금 포함) 통장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자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자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V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자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가점제가 적용되는 전용면적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40%를 가점제로, 나머지 60%는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ol style="list-style-type: none">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ul style="list-style-type: none">-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 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 및 주소로 예비입주자관련 안내를 하오니 연락처 및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동·호수 배정 주점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당첨자는 무효처리 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제57조제8항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청약업무수행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및 제28조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VI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및 검수 (공급계약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주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1.21.(화) •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1.24.(금) ~ 2023.11.27.(월) (10:00~17:00) • 장소 :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동파동 1802) <p>※ 운영 방법 및 시간은 추후 안내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 2023.12.04.(월) ~ 2023.12.07.(목) (10:00~16:00) • 장소 :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동파동 1802)
일반공급	1순위 / 2순위			

-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http://www.applyhome.co.kr>)을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온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3.11.21.(화) ~ 2023.11.30.(목)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제공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3.11.21.(화) 08:0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VI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비고
2023.12.04.(월) ~ 2023.12.07.(목) (4일간, 10:00~16:00)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견본주택 (경기도 파주시 동파동 1802)	031-943-4400	일정 및 시간 변동 시 별도 공지

※ 순위 내 청약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계약체결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구비 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 시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일체	본인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 여부 확인 증빙 서류	본인	-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기타 서류
	○		계약금 입금 확인 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는 아파트 계약용으로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전자수입인지	-	- 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에서 전자수입인지 구입하여 계약시에 첨부 ※ 1억초과 10억원 이하 : 15만원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은 불가)
	○		위임장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신분증, 인장	대리인	-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발급한 여권은 여권증명서와 함께 구비해야 신분증으로 활용 가능)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상기 제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시 외국인은 공급신청 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당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함.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4호)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②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1)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2)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3)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고,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함.(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 사실임을 소명하여 인정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함.)
 - ① 청약가점항목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하여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적격 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4항)
 - ①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청약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도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하여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여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고발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 시에는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함. 또한, 계약자가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함.
- 단지 내 명칭 및 동·호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입주 전 별도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
- 본 아파트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면적이 차후 확정측량 등으로 인하여 면적이 변동될 수 있음.(단, 세대당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한다)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탑승위치 등)들은 준공도서의 내용에 준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자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자가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계약관리(안내, 고지 등)를 위해 계약체결 시 2011년 07월 29일부터 새로운 법정주소인 도로명 주소(행정안전부 안내 참고)를 사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시 도로명 주소가 명기된 제 증명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종전 지번 기준 주소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17.01.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분양계약 역시 신고대상에 포함됨. 따라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가 공동의 신고를 요하므로,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사업주체에 신고를 위임하여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음.
- 부동산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 함.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
-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납부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제반사항은 계약자의 책임임.-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함.

* 주택소유에 의한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등본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 공유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소유자에 해당됨.
-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지분 소유자 전원이 주택소유자로 인정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모계좌)	종도금, 잔금(가상계좌)	
분양대금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605712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약금 계좌(광주은행, 1107-021-605712, 예금주 코리아신탁(주))는 분양대금 관리계좌(모계좌)로 최초 분양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 이후 분양대금(중도금, 잔금)은 계약자별 개별적으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 및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치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지정된 계좌로 무통장 입금(입금 시 비고란에 동-호수 또는 계약자 성명 필히 기재 예시 : 101동 301호를 계약한 흥길동 → 1010301흥길동) 하시기 바라며, 당사에서는 납부 관련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음.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단, 무통장 입금자 종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 계약체결 시 무통장 입금증 지참 요망.(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룰 수 없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대출관련 세부 일정은 당사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사업주체가 알선하는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신청 여부는 계약자의 선택사항임.
- 본 아파트의 중도금대출 알선조건은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총 분양대금에 60%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 및 조건에 따라, 중도금대출을 알선할 예정임. 단,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중도금 대출 이자후불제**’ 조건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정부의 관련정책, 금융기관의 대출취급방침,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 한도가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한도축소 등의 사유로 인해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고, 계약자 자기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기일 내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 및 대출취급상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대출은행과 대출협약에 따라 공급대금의 10% 이상 납부 이후 대출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 담보대출 제한, 보증서 발급제한 등) 등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 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사항(대출취급기관, 조건, 대출취급상품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대출에 필요한 중도금 대출관련 보증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현금으로 직접 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 시 연체로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없음.
- 중도금대출 관련 보증서의 발급가능 여부에 따라 대출알선조건이 변경 또는 대출이 불가할 수 있음.
- 대출보증요건 강화에 따라 대출 보증건수 및 보증한도 등이 제한될 수 있음.
-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에 의해 입주시점의 담보대출에 대한 대출심사 강화, 원리금 상환조건 등 규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당사는 대출기관과 협약 후 계약자에게 제시한 조건으로 대출을 신청한 계약자에게만 대출을 알선하며, 계약자가 당사의 대출알선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경우 대출을 일선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 신청은 계약진행에 따라 모집공고에 기재된 중도금 납부 약정일자보다 다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이유로 사업주체에 분양계약해지 요구, 중도금 대출 신청 거부, 발코니 확장비 및 추가 선택 품목 대금 납부 거부 등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중도금 대출 신청 및 기표 일정이 공급대금의 각 납부회차 이후일지라도 이전 회차의 공급대금까지 함께 기표하여야 함.
- 대출은행과의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정보제공 미동의에 따른 대출 불가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는 이에 책임지지 않음.)
- 대출알선과 관련하여 당사 및 금융기관에서 제시한 서류의 미제출시 당사는 대출을 알선 하지 않음.
- 당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출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해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 등이 발생할 경우 대출 금융기관의 대출중단 등 요구에 따라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및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책임을 요구할 수 없음.
- 상기내용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알선은 확정이 아니며, 중도금대출이 알선이 불가할 경우 계약자 자력으로 분양대금을 납부 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금액 조정에 따른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계약자가 직접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확인 제도 실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주택법」 제48조의2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에 의거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2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사전방문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방문기간 시작일 1개월 전까지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6년 08월경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에 따라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월을,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수분양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이며, 원활한 입주를 위하여 입주지정기간은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60일 이상으로 할 예정임.

▪ 부대복리시설

-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맘스테이션, 독서실,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다목적실 등], 주민운동시설 등
- 일부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실외), 부대시설은 조경 및 시설물 계획 변경에 따라 견본주택 내 모형도 및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하자보수는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적용됨.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금액	계약금 (계약 시)	종도금 (2024-05-10)	잔금 (입주 시)	비고
84A	6,630,000	670,000	670,000	5,290,000	
84B	7,860,000	790,000	790,000	6,280,000	

■ 발코니 확장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자세한 발코니 확장공사 내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또는 문의하시기 바람)
-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기준 : 「건축법 시행령」 제2조14호, 제46조제4항, 제5항 및 관련 규정 등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
-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 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항목 등의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 및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등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으며 취·등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음.(설비 및 인테리어 설계상 연관되어 있어 개별 아이템별 신청이 불가함.)
- 건축공정상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시 발코니 확장공사 여부를 선택하여 발코니 확장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등으로 인하여 변경 및 추후 선택이 불가능함.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과 관련된 마감자재 변경 및 제품의 품질, 품귀 등의 사유로 인해 조정될 경우 동질 이상의 품질 및 기능으로 조정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시 관련법상 발코니 내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수 있고 발코니 창호공사, 발코니 확장공사 및 마감자재의 내용 등을 주택형별로 다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반드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후 계약을 체결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동일 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근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의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후 비확장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제외하고는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샤시,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의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풍통, 선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등기구의 개수 및 캠프의 개수가 확장형에 비해 줄어들거나 크기가 축소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거실 우물천장이 시공되지 않음.
- 안방 발코니 옆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에는 철재문이 설치되며 단열성능으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 시공함으로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탑입주자가 불만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가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다면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바람.
- 발코니 비확장 선택세대가 입주 후 개별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를 하여 발생되는 마감재 오염 및 훼손, 결로, 단열 등의 문제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이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단위 : 원,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선택안	에어컨 설치부위	금액	계약금 (계약 시)	중도금 (2024-05-10)	잔금 (입주 시)	비고
84A	3대	거실, 주방, 안방	5,900,000	1,000,000	1,000,000	3,900,000	제조사 : 미정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900,000	1,000,000	1,000,000	6,900,000	
	6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알파룸 (“ㄷ”자형 주방 선택 시)	9,900,000	1,000,000	1,000,000	7,900,000	
84B	3대	거실, 주방, 안방	5,900,000	1,000,000	1,000,000	3,900,000	
	5대	거실, 주방, 안방, 침실1, 침실2	8,900,000	1,000,000	1,000,000	6,900,000	

- 시스템에어컨 옵션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견본주택에서 확인 가능(건립세대 해당)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시스템에어컨을 위한 천장 냉매배관 및 천장 드레인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실 공간에 설치)
- 시스템에어컨, 주방가전제품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점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시 냉매매립배관 및 콘센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본시공 시 설치되는 제품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사이버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각 실 에어컨은 설치되어 있는 방의 냉방부하를 만족하는 용량으로 가변형 벽체를 확장할 경우에는 실면적이 증가하여 에어컨 용량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옵션 설치안에 따라 실외기 용량이 상이하므로, 추후에 실내기만을 추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냉매배관(거실, 안방 각 1개소) 및 에어컨 실내기용 전기시설 설치공사를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실의 냉매배관 및 전기설비 설치공사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실내기 위치는 견본주택과 일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에어컨 용량은 실면적에 상응하는 냉방부하에 따라 결정되며 동일 주택형이라도 타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시스템에어컨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사항 옵션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서 시스템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매립 냉매배관은 거실, 안방에 각 1개소 기본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낸난방용으로 설치되었으며, 본공사 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난방 기능이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설치에 따라 미설치 세대와 스플링쿨러, 감지기, 등기구의 설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모계좌)	증도금, 잔금(가상계좌)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605728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코리아신탁(주)

- 상기 계약금 계좌(광주은행, 1107-021-605728, 예금주 코리아신탁(주))는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관리계좌(모계좌)로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종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 바람.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종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향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
- (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람.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계약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람.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에어컨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종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함.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툴 수 없다.

■ 추가선택품목 (발코니 확장 시 추가선택품목 선택가능)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84A		84B	비 고
	와이드형 주방 선택 시	“ㄷ”자형 주방 선택 시		
가구 및 인테리어	타입 선택	-	1,600,000	-
	현관	현관중문	1,600,000	1,600,000
		현관팬트리	1,300,000	1,200,000
	거실	바닥타일	1,300,000	1,300,000
		대형 아트월	1,200,000	1,200,000
		고급거실특화	1,000,000	1,000,000
		고급조명특화 (거실+주방)	1,800,000	1,800,000
		고급주방특화	4,800,000	3,200,000
	주방			5,000,000
				1. 엔지니어드스톤(상판 + 벽부) 2. 대형 사각싱크볼 + 고급수전 3. 팝업(멀티) 콘센트 4. 상부장 하부 간접 조명 5. 아일랜드장(엔지니어드스톤 상판 + 하부장)(84A 와이드형 주방, 84B 해당)

		주방팬트리	1,600,000	1,400,000	1,700,000	[84A 와이드형 주방] 슬라이딩도어, 센서조명, 시스템선반 [84A “=”자형 주방, 84B] 유리도어, 센서조명, 시스템선반
		냉장고장 (통합형 or 수납형)	1,100,000	1,100,000	900,000	냉장고장, 수납장, 측면장식장(84A 해당)
		주방장식장	1,900,000	-	-	불박이가구, 유리상부장, 엔지니어드스톤(상판 + 벽부), 상하부조명
안방		일반형 드레스룸	3,000,000	3,000,000	5,000,000	[84A] 입식화장대, 유리도어, 벽지, 일반형 시스템가구 [84B] 입식화장대 + 수납장, 유리도어, 벽지, 일반형 시스템가구
		고급형 드레스룸	4,800,000	4,800,000	6,800,000	[84A] 입식화장대, 유리도어, 벽판넬, 고급형 시스템가구(조명) [84B] 입식화장대 + 수납장, 슬라이딩도어, 벽판넬, 고급형 시스템가구(조명)
	침실	침실 불박이장	1,200,000	1,200,000	1,200,000	세미화장대, 수납장 (1개소 설치금액)
	부부욕실	고급욕실특화	1,300,000	1,300,000	1,300,000	대형타일, 욕실장 하부 간접조명, 복합환풍기, 비데일체형 양변기
가전	광파오븐	SK매직	600,000	600,000	600,000	
		LG전자	900,000	900,000	900,000	
	인덕션	SK매직	600,000	600,000	600,000	
		삼성전자	900,000	900,000	900,000	
	식기세척기	삼성전자	1,300,000	1,300,000	1,300,000	
		LG전자	1,300,000	1,300,000	1,300,000	

* **추가선택품목은 주택형별 개별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패키지 음선형으로도 선택하실 수 있음.**(단,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불가합니다)

* 고급주방특화 미선택 시 주방상판은 인조대리석, 주방 벽부는 타일, 일반형 싱크볼, 일반 수전, 비조명형 악세사리로 시공되며, 팝업(멀티)콘센트, 아일랜드장(84A 와이드형 주방, 84B 해당) 미시공됨.

* 일부 유상옵션 품목 선택 시 기본 마감재로 제공되는 벽지의 종류, 색상, 문양이 변경(현관팬트리, 안방 드레스룸 등) 되므로 해당 내용은 마감재리스트 및 견본주택을 내방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람.

* 주방상판 기본 마감재는 인조대리석, 주방벽부 기본 마감재는 타일로 시공됨.

* 현관팬트리 및 주방팬트리 옵션 미선택 시 조명이 설치되지 않음.

* 84A 주택형의 경우, 주방팬트리 및 주방장식장 미선택 시 일부 벽면이 벽지로 시공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고급조명특화(거실+주방) 미선택 시 주방 우물천장은 시공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추가선택품목 선택유무에 따라 일부 콘센트, 스위치 및 조명기구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일부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센서등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해당 품목 미선택 시 센서등 및 별도 등기구가 설치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부부욕실 고급특화 선택 시 벽, 바닥 타일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84A 주택형 주방장식장 추가선택품목 선택시 장식장 상판 및 벽면은 고급주방특화 선택여부와 관계없이 엔지니어드스톤으로 시공됨.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전제품별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패키지 옵션

구 분	항 목	84A		84B	비 고
		와이드형 주방 선택 시	"ㄷ"자형 주방 선택 시		
현관패키지	현관중문, 현관팬트리	2,800,000	2,700,000	2,700,000	
거실패키지	바닥타일, 대형아트월, 고급거실특화, 고급조명특화	5,000,000	5,000,000	5,000,000	
주방패키지	고급주방특화, 주방팬트리, 냉장고장, 주방장식장(84A)	8,900,000	5,400,000	7,200,000	
침실패키지	일반형	안방 일반형 드레스룸, 불박이장 1개소(침실1)	4,000,000	4,000,000	5,900,000
	고급형	안방 고급형 드레스룸, 불박이장 1개소(침실1)	5,700,000	5,700,000	7,600,000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 계약 가능하며, 품목별 선택 계약이 가능함.
- 상기 패키지 옵션에는 84A 탑입 선택("ㄷ"자형 주방 + 알파룸) 비용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반드시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은 개별품목과 패키지옵션을 혼용하여 선택할 수 있으므로 확보 없으시길 바랍니다.(예시. 현관패키지 + 거실 추가선택품목 개별선택 가능)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건립세대 해당)
- 주방 및 일반가구 미선택 시 일반도배 마감되며, 옵션금액 산정 시 해당하는 비용은 감액하여 반영된 것임.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선정된 제품의 형태·설치 위치 등의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대형 아트월 타일 선택 시, 납품자재 및 시공여건 등에 따라 타일 문양 패턴이 일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추가선택품목 선택 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추가선택품목은 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 및 변경이 불가함.
- 상기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의 디자인 컨셉에 따른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니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반드시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금액, 납부계좌, 납부일정

구 분				납부일정			
구 분	금융기관	납부계좌		예금주	계약금 (계약 시)	종도금 (2024-05-10)	잔금 (입주 시)
		계약금(모계좌)	종도금, 잔금(가상계좌)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605728	세대별 가상계좌 부여	코리아신탁(주)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10%	추가선택품목 금액의 80%

- 상기 계약금 계좌(광주은행, 1107-021-605728, 예금주 코리아신탁(주))는 추가선택품목 관리계좌(모계좌)로 추가선택품목 종도금부터는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에서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이체되어 관리되며, 세대별로 계좌번호가 상이하므로 임금 시 유의 바람.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계약금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가 선택품목 종도금부터 잔금까지는 항후 세대별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함.(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추가선택품목 계약금을 제외한 개인별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임.(개별 가상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은행 전산망에 의하여 상기 계좌로 이전 후 관리됨)
-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 계약금 계좌(모계좌)로 납부하여야 함.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오입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피해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종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당사가 적의 조정한 별매품(별도계약품목) 공급계약서에 준함.
- 사업주체의 PF대출금이 전액 상환될 경우 자금관리자인 코리아신탁(주)와의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기 수납계좌가 변경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수납계좌가 변경될 경우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서 상의 수분양자 주소로 해당 내용을 우편통지할 예정이며, 우편통지 도달과 관련한 사항은 다를 수 없다.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 「주택법」 제54조제1항제2호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기구,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 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함.)
-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 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체결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구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I	문	각 목문틀(사출포함), 목문상부 마감판, 마감캡, 문선, 디지털도어록, 목문짝(각 침실문, 욕실문), 시트지, 창호철물 일체	방화문틀 및 문짝, PL창호
II	바닥	마루, 걸레받이, 현관바닥재, 현관마루휀, 현관디딤판, 발코니바닥타일(시멘트몰탈 포함)	바닥난방 + 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에어컨 매립배관(안방,거실)
III	벽	벽지(초배지포함), 벽체마감(타일, 경량칸막이 등), 각방 온도조절기, 발코니 수전류	석고보드(단열공사), 시멘트 벽돌,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에어컨 매립배관(안방,거실)
IV	천장	천장지(초배지포함), 반자돌림(몰딩포함)	천장틀 위 석고보드, 커튼박스, 발코니천장 도장, 소방 스프링클러 배관 및 헤드, 환기설비배관 및 디퓨저(욕실제외)
V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옥조, 샤워기 등), 수전류, 액세서리류, 천장재(천장을포함), 샤워부스, 옥실 디퓨저, 옥실바닥 및 벽타일(타일시공을 위한 미장포함), 옥실등기구	시멘트벽돌, 벽 및 바닥방수, 전기설비 배관·배선
VI	주방	주방가구 및 기구(가스쿡탑 포함), 벽타일, 설비수전류, 액세서리 일체, 자동식소화기	소방관련시설, 설비배관(급·배수, 오수, 난방), 주방배기드트
VII	일반가구	신발장, 수납선반	-
VIII	조명기구	부착형 조명등기구 (매입등기구 제외)	전기배관·배전스위치 및 콘센트류, 매입등기구(욕실제외) 등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 원, VAT 포함]

주택형(약식표기)	84A	84B	비고
금 액	33,950,000	33,975,000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임.(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있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함.
- 마이너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시공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품목은 해당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추가 신청하거나 계약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과 선택형의 칸막이 제거(변경)를 개별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법에 의한 구조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시공·설치는 공사와 마이너스 옵션 세대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함.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 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함.(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징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품목-소방시설과 관련된 품목 / 단열공사 · 방수공사 · 미장공사 등 기초마감과 관련된 품목 / 전기공사·설비공사 등에 필요한 전선, 통신선 및 배관 / 그 밖에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업자는 아니 됨.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준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됨.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 시설, 기타 공사 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제외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시공 시 소방 관련 법령에 의한 자동식 소화기 설치가 가능한 렌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의 계약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기본선택품목 선택을 희망하는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기본선택품목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시공, 설치 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함.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배수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며, 이 경우 물사용의 제한이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향후 계약자가 별도의 발코니 확장공사를 할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제외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음.

IX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구 분	내 용
일반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 상 [주택형(m)]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평형 환산법 = 형별면적(m) × 0.3025 또는 형별면적(m) ÷ 3.3058)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당해 주택은 단지 배치상 동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 간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소음·진동 등) 및 사생활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본 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향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세대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입주개시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임. ■ 「주택법」 제60조제3항에 의하여 견본주택 내 평면도와 시방서, 마감자재 내역서(당사 홈페이지 확인 가능)를 비치하오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당첨자는 계약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지도, 설계도서 등 직접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책임이 있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와 관련된 사항을 양지하시여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 (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지역, 타사 또는 당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변경)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명칭 및 동표기 등은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따라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하여 단지모형, 조강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르며 관계법령과 상이할 경우 관계법령이 우선함.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증단(단종),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등등 이상의 제품(타사 제품 포함)으로 변경될 수 있음. ▪ 당해 구역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혈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저류시설, 전신주, 철탑, 비닐하우스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동측에는 약 25m 도로, 서측에는 약 29.5m 도로, 북측에는 약 28.5m 도로가 인접하여 있음. ▪ 단지와 인접한 도로로 인해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석 등이 추가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외부도로의 계획변경 등은 택지조성사업 시행자, 지자체 및 지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관련사항은 해당 지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측 25m도로 일부구간은 교통영향평가가 심의의결사항으로 가감속차로 설치 이후, 파주시청에 기부채납 될 예정이나, 해당 관청과의 협의사항에 따라 해당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가감속차로 구간 내 설치된 도로, 보도, 가로등 및 가로수 등의 시설은 공공시설물로서 부지를 제외한 시설물에 대한 소유, 유지보수 및 관리주체는 해당 관청일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의 경우 단지 동측도로변에 1개소(4차선) 설치될 예정임.
주변환경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계획임. ▪ 인근 계획된 초등용지((가칭)운정5초)를 포함하여 운정3택지개발지구 내 설립계획 중인 학교(유치원 포함)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 규칙 및 지침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 추진이 가능하고, 학교(유치원 포함) 설립계획은 투자심사 승인 여부, 공동주택 개발사업 진행 상황, 인근 공동주택 분양공고율, 실입주 상황, 학교 신설 교부금 예산 확보 시기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 등 해당 관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초등학생은 원 통학구역인 (가칭)운정5초 설립을 통해 배치 예정이며, 향후 학교설립 추진상황에 따라 (가칭)운정5초의 2026.03월 개교가 불가할 경우 인근학교에 임시배치 될 수 있음. 임시배치 될 경우, 통학대책 등을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마련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교육지원청)으로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중학교는 교하·운정중학교(교하중, 두일중, 심학중, (가칭)운정5중) 배치 예정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선 지망 후 추첨 방식으로 배정됨에 따라 인근 중학교로의 진학이 어려울 수 있음. ▪ 고등학교는 파주시 고등학교 배정방식에 따라 파주시 기존 고등학교 및 파주 지역 내 신설 예정 고등학교에 학생들의 지망에 따라 배정. 향후 배정방법은 교육부의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고등학교 학교군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의 학생배치계획에 따라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구내 학교 등 교육시설 용지(유치원 포함)는 해당기관의 수요가 없을 경우, 향후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동측에 주상복합용지, 서측에 도서관용지, 남측에 문화공원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 및 공동주택용지, 북측에 주상복합용지 및 일반상업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본 사업장의 남측에는 문화공원용지가 위치해 있으며 문화공원의 계획 및 설치는 당사의 계획사항이 아니므로 당사에 문화공원의 연결 등을 요구할 수 없음. ▪ 문화공원과 인접하여 위치한 동의 경우 문화공원을 사용하는 시민들로 인해 소음, 분진, 악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원 계획의 경우, LH파주사업단 관할이며 해당 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시 이를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단지 동·북측에 주상복합, 남측에 공동주택, 학교 및 근린생활시설 건립 예정으로 향후 해당 사업지 진행에 따른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침해 및 소음노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부지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주유소 등)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향후 동별, 향별, 층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모형도 및 카탈로그 등 흉보물에 표기된 주변 공원과 녹지계획 등 기반시설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계획변경에 따라 선행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부지 남측에 오수중계펌프장, 저류시설,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음. 이에 따른 소음, 진동, 악취 등을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지 주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외곽 근린공원 및 도로의 레벨, 형태, 시설계획 등 조성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관계기관 등의 계획에 의해 변동될 수 있음. 본 단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의 본선터널에 인접하여 철도 관련 개량 공사, 유지관리, 열차운행 등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또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공사 중 열차운행 및 유지보수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 등 생활환경 규정치 이내 영향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할 시 해당 비용은 입주민 부담으로 진행되어야 함. 본 단지는 파주운정3지구 특별계획구역과 인접하여 있으며, 해당 구역에 위치한 상업시설 등을 사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본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용지가 위치해 있어 단지 내부 및 인근 도로를 통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소음예측평가에 의해 당사업지 서측부분에 길이 약 90m 높이 약 12m의 방음벽이 계획되어 있으며, 방음벽의 위치, 높이, 길이 및 디자인은 지구계획 및 각종 인허가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지구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지구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음. 경관녹지, 원총녹지 및 녹지 등을 개발 및 실시계획,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으로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당해 지구 내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 전기·난방시설, 기타처리시설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지연과 생활불편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택지지구 준공완료시까지 공사 소음, 분진 및 비산먼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교통 및 도로, 생활편의시설 등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람. 지구 내 대중교통(시내버스 등)의 운행시기, 운영, 관리 등은 자자체 및 자자체에서 위탁한 업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당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노선 결정, 운영시기 차이 등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당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관련사항은 해당 자자체 및 위탁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람. 당해 지구에 인접한 도로 등의 영향으로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당해 지구에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설치되는 도로, 공개공지, 공개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개설로 인하여 소음 및 생활 침해 등이 발생될 수 있음. 단지 인근에 학교, 업무시설, 단독주택, 균린생활시설용지,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상업용지, 공원 및 녹지, 도로 등에서 발생될 수 있는 환경(간섭, 소음)오염 및 유해시설 등은 공동주택 주거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계약자는 현장 등을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각종 광고·홍보물(사이버 견본주택, 흥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도로 등) 등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발췌·인용한 것으로서 국가 또는 해당기관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이 향후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당해 지구 내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 주변 향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냄새유발시설, 주변개발 등 주위 환경에 대해서 청약 및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계약자의 미확인 등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수 있음. 		
인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등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음. 해당 단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속해 있으며, 작전성 검토(군심의)를 완료하였음. 		
기타사항	<table border="1"> <tr> <td>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함.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 가감속차로 대지면적 정산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시공 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도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끝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감속차로 설치 후 파주시청에 기부채납 되는 부지의 경우 입주자의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됨.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가구역(근린생활시설에 분배되는 대지지분)이 배치도에 표기될 수 있음. </td></tr> </table>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함.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 가감속차로 대지면적 정산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시공 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도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끝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감속차로 설치 후 파주시청에 기부채납 되는 부지의 경우 입주자의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됨.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가구역(근린생활시설에 분배되는 대지지분)이 배치도에 표기될 수 있음.
입주 및 등기 (면적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공지할 예정임. 계약자는 입주 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함. 시공 중 문화재 발굴이 필요한 유적출토 시 문화재 처리에 따른 소요기간으로 인해 입주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시공 중 천재지변,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지체보상금 지급하지 아니함.) 기반시설 및 대지면적 확정 측량, 가감속차로 대지면적 정산에 따른 대지면적이 증감되어 세대당 대지지분이 변동될 수 있음. 대지경계 및 면적은 도시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세대당 공급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으나 증감이 있을 때에는 분양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키로 함.(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계약면적은 공부정리절차 또는 실시공 시 시공여건 등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변동될 수 있음. 사업구역의 대지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 증가면적은 사업주체가 부담도록 하고, 감소될 경우 그 잔액은 입주자에게 반환함. (단, 세대당 증감면적이 소수점 이하일 경우 정산하지 아니함.)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특정세대에 산입될 예정이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본 아파트는 기반시설공사 준공 지연 등으로 대지의 이전등기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고, 확정 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각 세대별 대지지분의 경우 아파트 대지지분에서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로 배분하여 소수점 끝째자리 미만에서 절사한 결과, 일부세대는 입주자모집공고 상의 대지지분과 소수점 이하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가감속차로 설치 후 파주시청에 기부채납 되는 부지의 경우 입주자의 대지면적 산정에서 제외됨.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상가구역(근린생활시설에 분배되는 대지지분)이 배치도에 표기될 수 있음.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흥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등)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제공여부, 수량,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길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종 흥보물에 분양충보자료는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개발계획 예정도 등은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음. ▪ 단지모형도 및 흥보물상 표현된 지구 내 학교, 공원, 도로계획, 지구경계, 인접단지 등은 관계기관의 자료를 참고한 것으로 향후 실시계획 및 공사 종 변경 또는 연기, 취소될 수 있음. ▪ 각종 광고·흥보물(사이버건본주택, 흥보 카탈로그, 홈페이지 안내문 등)에 표현된 이미지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도로, 철도, 건물, 기타 시설 등이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음, 먼지 등을 비롯한 각종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흘통, 온도조절기(견본주택에는 온도조절기 미설치),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견본주택 사인물 등 각종 인쇄물 및 사인물에 삽입된 에어클린시스템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기술적인 문제나 제조사의 사정 등으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현장 여건에 따라 주방TV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 전에 사업부지를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일조여부 등 단지여건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실시설계 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일조권 및 조망권(조경시설물 및 미술장식품, 주차장 램프인접세대)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내 비치된 설계도서 및 참고도서를 미리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청약 전 설계도서 등의 확인이 필요하신 분은 유선신청 후 도서에 한해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확인 가능함.) ▪ 아파트 지붕층 및 육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통신중계장치, 피뢰침, 환기용 벤틸레이터, 태양광 패널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단지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음. ▪ 단지 출입구는 단지 동측에 위치하고, 출입구 인접동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및 분진 빛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동측 출입구는 근린생활시설 주차장과 동일한 출입구로 이용됨. ▪ 단지 내 각종 포장부위의 재질, 색상 및 문양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입주자 사전방문일 등 당사가 지정한 날짜 외에는 현장에 출입할 수 없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내 보행로의 위치, 규모 및 주요공간에 설치된 시설을 등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도 및 통로 등에서 세대 내부가 보일 수 있어 일부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으며 방범창이 설치되지 않음. ▪ 주동 서측에 높이 약 12m 길이 약 90m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 세대는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의 레벨차로 인한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설치로 일부세대의 경우 조망권 및 일조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외부에 설치되는 옹벽, 산석, 조경석 등의 계획은 실시설계 시 높이 및 길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타동에 추가로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쓰레기처리장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쓰레기처리장소가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쓰레기처리장소가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부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장소 및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가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처리장소,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등이 노출되어 저층부세대의 조망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설치 위치, 규모 등은 현장상황에 따라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및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와 인접한 세대는 냄새, 소음, 진동 등에 노출될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장소 인근 세대는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 주변 훈통, 쓰레기 분리수거함, 음식물류폐기물 개별계량장비(RFID) 등의 위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추후 위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출입은 각 세대간 공유하는 공간으로 입주자 임의로 전실을 구성할 수 없음. ▪ 각 동별 계단실 창호는 고정창으로 설치되며, 5개층마다 환기창이 설치될 예정임. 단, 동별 환기창이 설치되는 위치는 다소 차이가 있음. ▪ 지하층 환기 및 채광을 위하여 채광창 및 D.A가 지상에 노출되며, 저층 세대에서 시야 간섭, 소음 및 분진 등에 의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해당 위치는 계약 체결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바람. ▪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및 D.A(기계실, 발전기실, 전기실, 지하주차장의 환기시설)가 설치되는 인근 세대는 소음, 조망 및 분진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에는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 실외기 패드 및 환기설비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시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하부 PIT층에 제연설비를 위한 제연팬 및 외기취입구가 설치되어 있으며, 가동시 소음·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에는 기계실 및 펌프실, 동지하에 집수정 등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 될 수 있음.
-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에 설치되는 환기구가 외벽 방향으로 설치되어 소음, 냄새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단,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공용 태양광 패널이 전동(1301, 1302, 1303, 1304, 1305동) 옥상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규모(크기, 높이, 개소)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고, 시설을 웨손하거나 제거할 수 없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1302, 1305동 지하1층(蕙馨실포함) 및 옥상층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개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시공여건에 따라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청약 및 계약 전 견본주택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설치되는 한전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위치는 해당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기사업법」 제6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4조에 따른 「한국전기설비규정」 제232.84조에 의거 주택용 분전반은 세대 내 노출된 장소(신발장, 옷장 등의 은폐된 장소는 제외한다.)에 시설될 수 있음.
- 주동 옥탑 창호의 위치 및 크기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 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 경관조명으로 발생되는 유지·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 본 단지의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 단지명칭, 동 표시 등은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별도의 동의 없이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인허가 진행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 인근 공동주택용지, 주상복합용지, 일반상업용지, 학교용지 등으로 인해 조망 및 일조 간성이 있을 수 있음.
- 동출입구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 될 수 있음.
- 파주시청의 인허가 절차에 따라 본공사 진행 중에 색채, 입면, 옥탑구조물, 조경, 사인물, 경관조명 등에 대하여 디자인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결과에 따라 인허가도서, 분양 시 견본주택에 표현된 모형 또는 분양홍보물의 계획과 달라질 수 있음.
- 측벽사인물의 경우 추후 파주시청과 협의를 통해 사인물의 크기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에 설치되는 전열교환기 필터 교체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배기팬 및 실외기 패드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근린생활시설, 부대시설 등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운영방식 및 관리비부과 등은 입주자가 결정하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책임지지 않음.
- 동출입구의 형태는 단지지형 및 건축계획을 고려하여 다르게 디자인될 수 있음.
- 대지 서쪽에 위치한 방음벽의 높이, 길이, 설치위치 및 디자인은 모형, CG와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단지 내 건물의 외관 디자인(색채, 줄눈 계획, 입면 패턴, 마감재, 옥상 구조물 등), 공용부 디자인(동 출입구, 지하층 출입구, 필로티, 캐노피, 주차장 램프, 경비실, 부대시설 등), 외부 시설물(문주, 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보관소 등), 조경 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난간의 형태, 용벽 디자인 등은 설계 및 인허가 조건 이행, 사업주체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당사의 고유한 업무 영역으로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외부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은 별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아파트의 마감재 사양 및 디자인에 대해 타 단지를 비교하여 추가 설치 또는 교체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동측 출입구에는 통학차량 정차를 위한 드롭오프존이 설치될 예정임. 견본주택 모형도 및 단지배치도에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연도, 고가수조,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태양광 발전모듈, 이동통신 중계기, 항공장애등,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 침해,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및 외벽에 경관조명, 조형물(조형물은 상부에 도장 미시공) 등이 설치되어 일부 세대 일조,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LED조명 인접세대는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 소음 등의 피해가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에 전력 및 통신 인입을 위한 시설물, 전력 및 통신맨홀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시설물의 위치는 한국전력공사,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와 면허거나 또는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되거나 발생할 수 있음.
- 부대시설,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해 있는 동출입구의 경우 타 동출입구보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내 외부 마감수준은 인허가도면, 모형, 공동주택 내 유니트 등 분양시 제시한 기준을 근거로 시공되며 이 외의 추가적인 마감요청 등은 제시할 수 없음.
- 본 사업장은 파주운정3지구의 민간사업 중 선행사업으로 후행사업의 진행에 따라 공사가 진행되므로 그에 따라 입주 후 공사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한 분진 및 소음이 발생될 수 있음.
- 본 현장의 단지 내 도로등의 레벨은 분양시점의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계획으로 택지준공 시 도로의 레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모형도에 표현된 단지 외관의 B.I(로고)등의 크기 및 위치는 본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B.I의 경우 1302동, 1305동에 설치될 예정이며, 추후 설치 위치, 발광형 B.I 설치 여부 등 상세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발광형 B.I 인근세대의 경우, 빛공해 등의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출입구 차단기 설치 위치의 경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지하 창고의 경우 부대시설 및 관리사무소용으로 입주민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음.
필로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부 동은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설치되며,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의 층고는 각 동마다 상이할 수 있음.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옆, 상부 세대는 시설물의 이용과 외부통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 위층 세대의 바닥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문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출입구 문주는 동측 출입구(1개소)에 설치되어 문주 설치로 인한 일조권, 시야간섭 및 빛공해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주택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을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되며,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 공간과 지하부분 계단실은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환기를 적절히 시행해야 함. 지하주차장 배수 트렌치는 구배가 없으며, 시공 허용오차로 인해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 (트렌치 위치 및 규격은 분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 훈름 상부에 환기탑이 설치되며, 일부 동의 경우 근접설치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지하1층 주차장 높이는 2.7m, 지하2층 주차장 높이는 2.3m로 설계되었으며, 실시공 시 유효천장고는 변경될 수 있음. (단, 주차구획의 높이는 2.1m로 계획함)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 35개소가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장의 위치, 구조에 따라 배치는 달라질 수 있으며, 유지관리의 경우 입주민 부담임.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각 동별로 접근성이 상이하오니, 관련내용을 사전에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지하주차장 내에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충별 및 동별 설치위치와 개소가 상이하며, 또한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위치와 개소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백색차량의 차량통행구간은 유효높이 2.7M(지하1층)으로 계획되어 있으며, 전동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되어 있음. 조업주차공간 및 무인택배시스템은 동별설치 예정이며, 동별 이용거리 및 이용개수에 차이가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단. 무인택배시스템의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는 상호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함.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 세대는 출입구를 이용하는 차량에 의해 빛공해,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느낄 수 있음. 지하주차장 출입램프 구조물로 인한 시야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주민공동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함.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시설에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및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입주자에게 인계할 예정임. 입주 후 신속한 하자상담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주민공동시설 내 일부 공간을 2년간(필요에 따라 연장가능) A/S센터로 무상 사용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작은도서관, 독서실, 어린이놀이터, 맘스테이션,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다목적실, 주민운동시설 등] 등이며, 내부시설물(운동기구 등)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등 단지 내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동에는 부대복리시설(경비실, 근린생활시설,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의 발생이 있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람.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내부시설물, 비품 등은 설치되지 않음. 기타 외부시설물은 이용상의 편의나 기능성 향상을 위해 공사 시 변동될 수 있음. 부대복리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등과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의 옥상을 전용공간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부대시설 실외기실 및 실외기실 루버의 경우 추후 크기 및 설치위치가 변경, 추가될 수 있음.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설치 위치에 따라 각 동별로 접근성, 사용성 및 편의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지하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의 경우 1304동과 1305동 사이 지하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각 동별로 해당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상이하오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관리사무소는 1302동 1층, 경로당은 1305동 1층, 어린이집의 경우 1305동 전면에 별동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지상에 설치되는 주민공동시설 인근세대의 경우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투시, 소음, 진동 등의 생활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린생활시설은 건축계획변경에 따라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레벨, 사인을 위치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써 공동주택단지와 별도 구획이 불가하나, 대지의 관리를 위하여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의 범위는 배치도에 구분될 예정임. 근린생활시설 이용자를 위한 지상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차량 출입에 따른 불빛 및 소음 등으로 인해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패드 설치 구간은 옥상에 배치될 예정이며, 실외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주차장은 아파트와 일부 동선이 중복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보관함 관리주체는 해당시설 입점자(임시자)가 관리함. 인접한 근린생활시설의 에어컨실외기, 환기구가 설치되어 저층부 세대에 소음, 분진, 냄새가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설치되는 상가용 전기 인입 개폐기 또는 변압기 설치위치는 해당관할지역 한국전력공사와의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에 인접한 세대의 경우, 근린생활시설의 용도에 따라 냄새,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는 시각적 간섭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지붕 및 주변에는 해당 시설의 주방 배기판 및 실외기 패드 등이 다수 설치되며, 해당 시설 설치로 인하여 소음 및 시각적 불편함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시설과 인접한 저층 세대의 경우 계약 전 이를 꼭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지반레벨극복을 위해 대지경계 및 단지 내에 설치하는 구조물(콘크리트 옹벽, 조경석 등)은 현장여건 및 시공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지 외부의 도시계획도로의 레벨조정으로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지반레벨(계획고)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부대복리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기계실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지 내 지하에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기계실 및 펌프실이 설치되어 장비류 가동 시 미세한 소음 및 진동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음.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조건 이행 및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일부 저층세대는 조경계획으로 인한 일조량, 조망권 등의 간섭이 있을 수 있음. 단지 내 소방관련 에어매트가 설치되는 공간에는 식재 및 차폐시설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일부 세대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공용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PD, EPS, TPS실 등 내측면 조적 및 철판 마감면에는 별도의 마장 또는 도장 마감이 시공되지 않음.(단, 지하 및 1층에는 공용출 마감계획에 따라 조적으로 시공될 수 있음.)
1301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 1호, 4호 라인 지상 1~2층이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음. 인접동 옥상 조형물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일조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음. 주동 북측에 단지 출입구 및 맘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전조등 등에 노출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주동 동측에 경비실이 위치해 있어 해당 시설을 사용하는 주민으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주동 서측에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주동 남측에 생활쓰레기 저장소가 위치해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동 남측에 문화공원301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 시설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필로티 내부, 측면, 1,2호 라인 후면, 3,4호 라인 전면 부분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302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동 1호, 3호 라인 지상 1~2층이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가 계획되어 있음. 주동 4호 라인 지상 1층 관리사무소가 계획되어 있음. 인접동 옥상 조형물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일조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음. 주동 남측에 단지 출입구 및 맘스테이션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한 저층부 세대는 차량 소음, 전조등 등에 노출될 수 있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으로 인해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주동 남동측에 근린생활시설 전용 주차장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및 이용객으로 인해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의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주동 북측에 생활쓰레기 저장소(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가 위치해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주동 북서측에 수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필로티 내부, 계단실 인근, 주동 남측 2,3호 라인 인근에 팬룸, 발전기실, 전기실의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1303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1호 라인 지상 1~3층이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2호 라인 지상 1층이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로 계획되어 있음. ▪ 인접동 옥상 조형물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일조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음. ▪ 주동 남측, 북서측에 생활쓰레기 저장소가 위치해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남서측에 수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북측, 동측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1호 라인 인근 근린생활시설 옥상에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하부가 근린생활시설과 인접하게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필로티 내부, 주동 후면, 측면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304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1호 라인 지상 1~2층이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로 계획되어 있음. ▪ 인접동 옥상 조형물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일조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음. ▪ 주동 지하 인근에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에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서측에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공간이 계획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높이 약 12m 길이 약 90m의 방음벽이 설치될 예정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동 남측, 북동측에 생활쓰레기 저장소가 위치해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서측 문화공원3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 시설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동측에 수경시설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북서측에 단지출입동선이 계획되어 있어 이를 사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한 소음, 분진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1호 라인 측면, 계단실 인근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1305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동 1호 라인 지상 1~2층이 필로티형 동출입구 및 연결통로로 계획되어 있음. ▪ 주동 2호 라인 지상 1층 경로당이 계획되어 있음. ▪ 인접동 옥상 조형물로 인하여 일부세대는 일조의 영향을 일부 받을 수 있음. ▪ 주동 서측에 높이 약 12m 길이 약 90m의 방음벽이 설치될 계획이며, 인접세대의 경우 시야간섭 등의 생활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동 북서측에 부대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입주민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북서측에 생활쓰레기 저장소가 위치해있어, 계절별 해충,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북서측에 부대시설 실외기 설치 공간이 있어, 소음 및 분진 등으로 인한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남동측에 어린이집이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의 이용에 따른 생활불편을 야기할 수 있음. ▪ 주동 후면 및 계단실 인근에 D.A가 설치될 예정이며, 이에 따른 조망간섭, 냄새, 분진,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주동 남동측에 설치되는 옥외 승강기 및 계단 설치에 따른 세대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주동 남동측에 어린이집, 유아놀이터가 설치될 예정이며, 입주민들의 이용에 따라 소음, 분진 등의 생활 불편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 주동 남측에 문화공원3이 계획되어 있어, 해당 시설 이용자들로 인해 소음, 분진 등 생활불편 등을 야기할 수 있음. ▪ 도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분진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에 의거 단지 내 옥상층에 구내용 이동통신 설비(중계장치, 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공사 시 통신품질을 위해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단위세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체결 하시기 바람. ▪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승인변경이 될 수 있으며, 또한 옥탑, 지층,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침실1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 등의 디자인 변경과 아파트 외벽 문양은 현장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각종인쇄물,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 홈페이지, 팜플렛,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제품은 자체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 등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 동등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가구는 추후 입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며, 주요 입찰 참여업체는 내부 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본공사 시 가구의 내부 상세 및 규격, 치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세대내의 보이지 않는 가구배면(천장, 벽, 바닥 등) 마감은 시공되지 않으며, 보이지 않는 곳의 시공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옥실 가구 혹은 거울 뒷면 등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제 시공 시 재생타일을 이용하여 마감하거나 혹은 마감이 되지 않을 수 있음.
- **주택형의 기본 천장고는 1층~3층 2.5m, 4층~최상층 2.3m로 시공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견본주택의 천장고는 1층~3층 기준 2.5m임.)**
- 생활환경(관상용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청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여름철 에어컨 작동 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반드시 실외기실의 루버창 개방 후 사용하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물건을 적재할 수 없음.**
- **필로티 상부 및 부대시설 상부를 제외한 2층~최상층까지 하향식 피난구가 설치될 예정임.**
- 하향식 피난구는 해당 관청의 정책 등 사정에 따라 현재의 계획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위치한 저층 세대 일부는 차량 출입에 따른 소음, 분진, 빛공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일부세대는 어린이놀이터, 옥외운동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이용하는 입주민들로 인하여 생활소음을 발생,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도로와 인접한 저층세대는 차량의 헤드라이트 및 보행자에 의해 거주 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지하주차장 출입구와 인접한 저층 세대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 소음 및 차량 진입 시 경광(사이렌)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고, 지하주차장 진입부로 인해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부대시설의 냉·난방 실외기 설치에 따라 인근 세대에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쿨러 헤드 위치 및 개수, 환기 설비는 견본주택용으로 설치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및 타입별 발코니 확장 유무 등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직접 외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음.
- 일부 단위세대 평면의 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및 실외기실(하향식 피난구)에는 배수구 및 배수용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우수관 및 오수관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샤크이 설치되지 않아 빗물이 발코니 내부로 유입될 수 있음.
- 에어컨용 냉매배관은 거실과 안방에 매립 설치되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미설치됨.
- 단위세대 바닥, 벽, 천장부위의 가구(주방, 침실, 옥실, 신발장 등) 및 거울(수납장 포함) 등이 설치되어 가려지는 부분(비노출면)은 마감재가 미시공됨.
- 거실 및 주방, 침실에 제공되는 강마루는 스텀청소기 및 물걸레 등 습기를 이용한 청소의 경우 옥재의 고유한 특성상 장시간 수분 노출 시 변형 비틀림의 우려가 있음.
- 옥실 문은 방수 성능을 위해 옥재 도어가 아닌 ABS도어로 시공 됨.
- 석재류 시공부위는 가공으로 인해 무늬와 색상이 동일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공극과 스크래치(자연현상)가 발생할 수 있음.
- 모션감지 센서로 작동되는 센서 타입의 절수기 설치 예정으로 바닥면에 절수기 폐달이 노출되지 않음.
- 주방 렌지후드내에는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어 화재시 소화액이 분사될 수 있음.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구, 가전제품(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해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기콘센트 및 스위치, 세대분전반, 통신단자함 등이 시공되어 있으나, 향후 공사 과정에서 위치나 방향 및 수량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 배선기구(스위치, 콘센트), 전자식스위치,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의 위치 및 수량은 단위세대 평형, 타입, 옵션, 아트월 위치 등에 따라 변경됨.
-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세대가 속한 동 및 라인에 따라 세대입구 공용부분 등이 상이하오니, 충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일조량 및 조망권은 당해 단지 여건 및 주변 여건으로 인하여 각 세대별로 상이하므로 계약 전 확인하기 바랍니다.
- 각 주택형별로 서비스면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서비스면적에 따른 분양가 차이는 당사가 임의 조정한 것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전 주택형은 전실이 제공되지 않으며, 입주 후에도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할 수 없음.
- 안목치수는 세대 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디자인 및 다양한 두께로 인해 도면과 다소 다를 수 있음.
- 타일, 석재류 등의 마감재는 제조사 및 제조시기에 따라 자재 특성상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음.
- 타일 나누기 등은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본 주택의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형식으로 공급될 예정임.**
- 세대내 창호,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등의 기준으로 시공 예정이나, 층 및 향에 따라 발생하는 바람의 영향에 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견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의 현장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변경사항이 발생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및 도면에 표현된 바닥배수구, 선흘통, 온도조절기(견본주택 미설치), 콘센트, 환기 디퓨저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름.
- **발코니2(주방발코니)의 천장재 및 천장고는 시공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2(주방발코니)의 경우,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될 예정으로 이는 견본주택과 상이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세대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 간접조명의 설치 공간 등을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입주 후 세대에서 사용하는 대용량 전열기기로 인해 순간 전압강하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조명기구 및 타 가전제품의 작동 이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특정회사 제품의 문제로 인지하고 제조사에 A/S 요청을 해야함. 현관 디딤판의 위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창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은 외측 유색(다크그레이), 내측 백색이 시공될 예정임.(실제 시공 시 창호 위치에 따라 외부창호 프레임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고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기간에 함께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 시공을 원하는 계약자는 입주자모집공고상 공고된 금액 범위 내에서 시행·시공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 상의 이유로 인해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체결 및 해지, 변경이 불가하여 비확장세대의 발코니 확장 공사는 준공 후 입주자 본인이 시공하여야 함.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거실, 침실1, 침실2, 드레스룸, 주방, 발코니2 :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 안방 내창 : 22mm 일면 아르곤 복층유리 + 22mm 복층유리, 안방 외창 : 22mm 일면로이 복층유리 단청으로 설치되므로,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발코니 미확장 선택 시, 발코니 내측에 거실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 그 외(침실1, 침실2, 드레스룸, 주방 등) :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이중창으로 설치되며(기타 외부와 접하는 부분은 샷시가 설치되지 않음), 발코니 미확장 시 발코니 확장 선택 시와 샷시의 설치기준이 상이하오니, 견본주택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발코니 샷시는 22mm 일면로이 아르곤 복층유리 적용을 기본사양으로 하며, 층·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차이로 유리의 강도 및 두께 또는 재질의 안정성을 위해 견본주택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풍압테스트 결과 및 안전상 등의 이유로 세대별, 각 실별(실별 내에서도 차등가능) 유리두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의 발코니 비확장으로 인한 단열재 시공으로 벽체 돌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위치와 상태, 커텐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시 확장부위는 직접외기에 의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아파트는 적법한 강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체결한 세대가 확장 및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상부층이 확장 세대일 경우 상부층 확장 발코니의 단열을 위하여 상/하부층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천장에 단열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후 비확장 세대는 개별 발코니 확장을 할 경우에도 천장에 설치되는 단열재를 제거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 세대의 옆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확장세대의 단열을 위하여 비확장 세대 및 확장세대 측벽에 단열재가 설치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실사용 폭이 줄어들 수 있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 비치된 도서를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확장세대와 조명기구, 배선기구 등의 위치 및 수량 등이 차이가 있음.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발코니 확장 세대와 다르게 가구 및 조명 설치 기준이 상이하고, 서비스 품목이 제공되지 않으며 발코니 확장 시 제공 혹은 선택 가능한 품목이 제공되지 않음. 마이너스 옵션 선택세대의 경우 반드시 아파트 공급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급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할 수 없음. 기타 마이너스 옵션 선택과 관련된 사항은 본 공고의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람.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충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어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우천 등으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는 시공되지 않으며, 배수구 위치 및 배수, 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발코니 확장공사로 인한 면적 및 마감형태(돌출/변형) 등이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재료의 특성과 규격이 다를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발코니 확장 및 옵션 공사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분양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함.
홈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대 내 설치되는 홈네트워크 설비를 이용하여 방문자확인, 가스밸브제어, 일괄소등제어, 엘리베이터 호출 등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음. 홈네트워크 설비이용에 따라 별도의 요금이 부과될 수 있음.

	기계환기 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실외기실에 기계환기설비(전열교환기)가 노출 설치됨. 실외기실 그릴창의 경우 전열교환기용 환기구가 설치될 계획이므로 이를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 기계환기설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있을 수 있음. 기계환기설비에 설치되는 필터의 교체비용은 입주자부담임.
견본주택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비확장형 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시공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견본주택 84A 주택형의 천장고는 2.5m(1~3층 세대 기준)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연출용 시공부분 또는 카탈로그, 기타 홍보물상 조감도, 사진 등은 당사에서 계약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연출한 사항이 있으므로 사업승인도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양지하신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품질, 품귀, 제조회사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와 신제품 개발 및 발주에 의한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인승,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시공된 발코니 현관 방화문, 가구, 창호(향후 풍압테스트에 따라 조정) 등은 본공사 시 입찰 결과에 의해 제조사, 브랜드, 하드웨어, 일부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견본주택 내 설치된 등은 연출을 위한 조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출용 조명은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음. 견본주택은 일정기간 공개 후 폐쇄 또는 철거되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이므로 사업주체에 문의하여 영상을 볼 수 있음. (다만, 내부 촬영 동영상의 복사, 반출, 캡쳐 등을 통한 외부 유출은 절대 불가하며, 촬영방식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공사와 무관하며 본시공 시 설계도서 및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와 감지기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임.) 견본주택 및 설계도서와 실제 시공이 다소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경미한 변경 발생)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이를 추후 통보하도록 할 예정임. 견본주택 내 미건립세대의 경우 견본주택 내 비치된 도서를 통해 확인하기 바람.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텐, 소파, 거실장,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함. 견본주택에 설치된 음향설비,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시공 시 미설치됨.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패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이버 견본주택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등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 이해를 돋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방문하여 직접 확인하기 바라며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기반시설 및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취소·지연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홈페이지, 각종 인쇄물 및 견본주택 사인물에 삽입된 광역위치도, 교통망, 토지이용계획도, 조감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이미지 컷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홈페이지의 VR동영상 및 카탈로그 등 각종 인쇄물에 사용된 인테리어 사진은 견본주택을 사전에 촬영하여 마감재 이외의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것으로, 계약 전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견본주택 개관 전 사전에 이루어진 광고·홍보상 부대시설 및 기타사항 등을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축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람.
계약관련	계약 시 주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은 불가함. 계약자는 아파트 계약면적 외의 일체의 비주거 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공동주택의 명칭은 향후 관할관청에서 정한 기준 등에 따라 정하여질 수 있으며, 분양 시 입주민의 이해를 돋기 위한 동호수의 표기 또한 변경될 수 있음.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금융기관, 시공사, 대행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음. (계약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청구) 외국인이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 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거소 요건 등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때 공급계약의 해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지하주차장 높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9의2

주차장 차로의 폭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주동선 7m, 보조동선 6m	지하 1층 : 2.7m / 지하 2층 2.3m	2.7m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이행여부

구 분	적용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 준수
	방습층 설치 (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 (다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
	고효율 전동기 (라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마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 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표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 (바목)	세대 내 설치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사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 (가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나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 (다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 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라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마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내진성능 및 능력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제3항 및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카리 진도 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 (MMI등급, I~VII)으로 표기

구분	등급
내진중요도 Ⅰ	VII-0.204g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 삼기 청탁금수준을 입증시점에 따라 다른게 축복수준을 정정함.

* 본 공고문에 포함된 인증서는 예비인증서로, 각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 여건 및 본인증 심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 아파트 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음.
- 아래 분양가격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용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단위 : 원]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항목	공종	금액	
택지비 (4)	택지공급가격	64,996,086,223	건축 (23)	철근콘크리트 공사	30,479,898,000	공사비 (51)	위생기구설비공사	562,568,000	
	기간이자	4,093,865,939		용접공사	-		난방설비공사	472,481,000	
	필요적 경비	3,393,038,364		조적공사	1,841,662,000		가스설비공사	314,969,000	
	그 밖의 비용	7,887,891,084		미장공사	2,017,693,000		자동제어설비공사	107,307,000	
토목 (13)	토공사	2,014,591,000		단열공사	-		특수설비공사	74,312,000	
	흙막이공사비	-		방수·방습공사	995,404,000		공조설비공사	635,299,000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1,573,879,000		전기설비공사	6,815,402,000	
	옹벽공사	1,550,178,000		가구공사	699,424,000		정보통신공사	1,604,463,000	
	석축공사	-		금속공사	469,319,000		소방설비공사	3,255,140,000	
	우수·오수공사	2,454,448,000		지붕 및 롤통공사	75,320,000		승강기공사	-	
	공동구 공사	-		창호공사	2,766,733,000		그 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8,148,723,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1,015,598,000		이윤	9,188,985,000	
	도로포장공사	2,454,448,000		타일공사	1,199,388,000				
	교통안전시설물 공사	-		돌공사	124,507,000	간접비 (6)	설계비	827,254,000	
	정화조시설공사	-		도장공사	820,482,000		감리비	2,926,370,014	
	조경공사	2,647,295,000		도배공사	444,513,000		일반분양시설 경비	4,556,598,781	
	부대시설공사	-		수장공사	790,245,000		분담금 및 부담금	2,136,769,000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6,883,445,000		주방용구공사	466,283,000		보상비	-	
	가시설물공사	1,035,583,000		그 밖의 건축공사	3,905,679,000		기타 사업비성경비	10,803,402,897	
	지정 및 기초공사	1,065,916,000	기계 설비 (9)	급수설비공사	1,833,763,000		그 밖의 비용(1)	19,289,438,698	
	철골공사	-		급탕설비공사	1,604,542,000		합계	226,326,600,000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 산출내역

* 택지비 및 건축비 가산비는 상한금액 산정을 위한 기준금액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 「주택법」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개하며, 상한금액 이하로 책정된 분양가격 공시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항 목		금 액	산 출 근 거
택지비가산비	합 계	15,374,795,570	-
	법정 택지이자	4,093,865,93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제세공과금	3,393,038,36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말뚝박기 공사비	1,246,477,81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흙막이 및 차수벽공사비	5,786,238,73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방음시설 설치비	301,127,555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지역난방부담금	554,047,161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건축비가산비	합 계	19,289,545,250	-
	구조형식에 따른 가산비용	2,154,153,78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법정초과 복리시설 건축비	1,294,839,714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인텔리전트 설비 공사비	홈네트워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초고속통신특등급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에어컨냉매배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기계환기설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공동주택성능등급	2,833,068,206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1,688,013,759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인정
	지하주차장 층고 증가 공사비	401,434,000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법령 개정에 따른 가산비	전기자동차충전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사업승인조건	건강친화형주택 (흡착흡방습친환경자재)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인정
		외관특화공사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불인정
		법정초과 조경시설설치비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분양보증수수료	517,644,152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에 따라 조정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 감리금액 및 회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위 : 원, VAT포함]

구 분	건 축	전 기	소 방	통 신
감리회사	(주)대명기술단건축사사무소	(주)세종기술단	(주)서광이에프	유한회사 이에프
계약금액	1,898,196,410	581,840,000	119,633,604	326,700,000

* 상기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은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감리금액을 포함한 총액이며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 내용

보증기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제 05612023-101-0004400 호	₩ 158,355,100,0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주택분양보증약관 제1조)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주택분양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현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역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자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흡오토, 밸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주택분양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에게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별도계약품목은 분양보증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사업주체, 시공사 및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구 분	사업주체(시행사)	시공사	자금관리 대리사무사
상 호	(주)명일건설	우미건설(주)	코리아신탁(주)
주 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381, 1002-2호(정자동, 폴라리스빌딩)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209, 2층(우산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해성2빌딩)
법인등록번호	200111-0430664	205211-0001385	110111-2937831

* 시행사 및 시공사의 법인명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분양자에게 고지하고 별도 공고는 하지 않음.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유의사항

- 코리아신탁(주)(이하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 (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합니다.
- "자금관리 대리사무사"는 부족한 사업비의 조달에 관여하지 아니합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등의 지급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합니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매도인"이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합니다.

분양 관련 문의

대표번호	견본주택 위치	홈페이지	비고
031-943-4400	경기도 파주시 동파동 1802	https://pj5.lynn.co.kr/	-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파주 운정신도시 우미 린 더 센텀 견본주택 및 고객센터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